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년 12월 28일	조례 제1077호
개정	2010년 9월 20일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11월 25일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3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년 11월 6일	조례 제18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년 9월 24일	조례 제1947호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9. 24>

1. 교통안전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9. 20, 2011. 12. 14, 2013. 3.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2. 26, 2019. 9. 30, 2020. 11. 6>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복지교육국장
2. 도시정책과장
3. 도로과장
4. 스마트교통안전과장
5. 시의회 의원 1명
6. 관할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장
7. 관할 교육청 학무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 및 교수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운수 및 교통관련 단체장
3. 장애인관련 단체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 12. 14>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하며, “지역개발국장, 주민복지과장, 가족여성과장, 교통행정과장”을 각각 “복지환경국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④②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제8조 중 “교통행정담당”을 “교통안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③ 부터 ⑤① 까지 생략

부칙 <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①⑨ 까지 생략

②①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②② 부터 ②⑤ 까지 생략

부칙 <2013. 11. 25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①⑩ 까지 생략

①①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①② 부터 ①⑦ 까지 생략

부칙 <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①⑥ 까지 생략

①⑦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①⑧ 부터 ③④ 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도시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건설도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⑫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19. 9. 30 조례 제173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 제863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

⑯ 부터 ㉑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6 조례 제18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 제898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교통과장”을 “스마트교통안전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21. 9. 24 조례 제1947호,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